



##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운영규정

제 정 일	2022. 7. 1
개 정 일	2023.11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수요자인 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직무분야 및 교육과정에 따라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고,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해당 산업체에 채용과 연계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학과의 구성)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대학 전체 학과가 참여할 수 있으며, 참여학 과가 융복합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 3조 (교육과정) ① 학과는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(교과목)으로 편성하고,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LINC 3.0 연계 트랙제 교육과정(이하 “트랙제”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고, 전체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8. 1)

제 3조의 2 (트랙제 교육과정 대상 및 방법) ① 트랙제는 년제, 학년, 계열 제한 없이 학기 단위로 운 영한다.

② 트랙제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을 이수한 결과 각각의 교과목별 학점이 C학점 이상일 경우, 트랙제 교육과정 이수증을 수여하고 졸업증명서에 트랙제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기재한다.

③ 트랙제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은 주관 학과에서 신청·관리한다.

④ 트랙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, 계절수업, 교외수업, 온라인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⑤ 기타 트랙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사운영 관련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22. 8. 1]

제 3조의 3 (트랙제 교육과정개발 및 개편) ① 트랙제 교육과정 개발은 「LINC 3.0 트랙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LINC 3.0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, 편성하고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확정한다.

② 트랙제 교육과정의 편성은 개발, 개편, 단순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1. 1)

[본조신설 2022. 8. 1]

제 3조의 4 (트랙제 교육과정 편성) ① 트랙제 반 편성기준은 반별 30명 이내로 한다.

② 트랙제 교육과정은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, 교과목 별 3학점 이내로 최대 9학점 까지 편성한다.

③ 트랙제 교육과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강을 허가한다. 단, 트랙제 교육과정 교과목 성적 미달로 인해 트랙제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교과목 추가 수강은 예외로 한다.

④ 트랙제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의 산업체 요구분 석을 통해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역량 기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 (개정 2023.11. 1)

⑤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LINC 3.0 트랙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 8. 1]

제 3조의 5 (LINC 3.0 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LINC 3.0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은 전임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와 개선이며,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8. 1]

제 4조 (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) ①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유형에 산학맞춤 유형을 포함한다.

②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을 할 때에는 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 개발한다.

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교재는 개발 학년도의 해당 학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 5조 (교육과정의 운영) ①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시 현장실습, PBL, 맞춤형(현장)실무, 캡스톤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대학 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

제 6조 (수업) ①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1. 1)

② 방학 집중이수제로 운영 및 이수한 산학연 연계 교과목의 경우 계절수업으로 별도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
③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협약 산업체의 현장에서 직접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.

④ 산학연 연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중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은 별도의 집중이수제 및 시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조기취업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 7조 (평가) 산학연 연계 교과목의 평가는 학점관리 지침에 따라 성적평가 및 관리한다.

제 8조 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